

## 15. 브라질 (Brazil)

### ◎ 주요 변동사항

구 분	2017	2019	비 고
보험료율	가입자 8%, 9%, 11% 사용자(자영자) 20% (질병, 출산, 가족수당 재원 병행)	가입자 8%, 9%, 11% 사용자(자영자) 20% (질병, 출산, 가족수당 재원 병행)	-
연금수급 개시 연령	남자 65세, 여자 60세	남자 65세, 여자 60세	-
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	180개월	180개월	-
노령연금 지급률	가입자 평균소득 100%	가입자 평균소득 100%	-
일시금	없음	없음	-

### 1 근거법 제정 시기

- **최초법** : 1923년(철도), 1934년(상업), 1936년(산업)
- **현행법** : 1991년(사회보장), 1991년(사회보험), 1993년(사회부조), 2013년(특별장애연금), 2015년(가사노동자)

### 2 제도형태

- **사회보험 및 사회부조**

### 3 적용대상

- **사회보험**
  - **당연적용** : 산업·상업·농업 임금 근로자, 농업근로자, 가사노동자, 비정규직 근로자, 선출직 공무원 및 특별제도에 가입되지 않는 공공부문 근로자, 자영자
  - **임의적용** : 학생, 전업주부, 실업자, 소득 없는 자
  - **특별제도** : 특정 부문 근로자, 군인
- **사회부조** : 브라질 거주 빈곤자

## ○ 가입자

- 사회보험
  - 월소득 1,751.81 reais까지는 월 적용소득의 8% ; 1,751.82 reais ~ 2,919.72 reais는 9% ; 2,919.72 reais 초과는 11%임(2019년 1월 기준)
  - 임의가입자는 신고소득의 20% ; 이미 기여 연금제의 수급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법정 월 최저임금의 11% ; 법정 월 최저임금의 2배까지의 소득이 있는 주부는 개인 소득이 없다면 법정 월 최저임금의 5%를 납부((Bolsa Familia cash grant 소득은 제외)
 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소득 하한액 : 법정 월 최저임금(998 reais, 2019년1월 기준)
 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소득 상한액 : 5,839.45 reais(2019년 1월 기준)
  - 가입자의 보험료는 질병 및 출산급여와 가족수당의 재원이기도 함
- 사회부조 : 없음

## ○ 자영자

- 사회보험
  - 월 신고 가입소득의 20% ; 이미 기여 연금제의 수급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법정 월 최저임금의 11%(단, 소규모 사업체인 경우 5%)
 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소득 하한액 : 법정 월 최저임금(998 reais, 2019년1월 기준)
 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소득 상한액 : 5,839.45 reais(2019년 1월 기준)
  - 자영자의 보험료는 질병 및 출산급여의 재원이기도 함
- 사회부조 : 없음

## ○ 사용자

- 사회보험
  - 월 임금지급총액의 20%
 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소득 하한액 : 법정 월 최저임금(998 reais, 2019년1월 기준)
 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소득 상한액 : 제한 없음
  - 초소형기업(연소득이 360,000 reais 이하인 기업) 및 소규모사업자(연소득이 360,000 reais 초과 4,800,000 reais 미만)는 직전 12개월 동안 신고된 연소득과 산업분야에 따라 월 신고소득의 1.66%~10.07% 납부
  - 사용자의 보험료는 질병 및 출산급여와 가족수당으로도 사용됨
- 사회부조 : 없음

## ○ 정부

- 사회보험 : 관리비용, 결손액 보전, 사용자로서 납부
- 사회부조 : 전체 비용

## ○ 노령급여

- 노령연금(사회보험)
  - 남자 65세, 여자 60세에 도달한 근로자 및 도시지역 자영자; 남자 60세, 여자 55세에 도달한 농촌지역 근로자
  - 1991년 7월 25일 전에 최초 가입한 도시지역 근로자는 법 경과규정에 따라 60개월에서 180개월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어야 함 ; 1991년 7월 25일 이후에 최초 가입한 도시지역 근로자는 180개월 이상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어야 함 ; 1991년 7월 25일 전에 최초 가입한 농촌지역 근로자는 법 경과규정에 따라 농업 분야에서 60개월에서 180개월의 근로기간을 증명하여야 함 ; 1991년 7월 25일 이후에 최초 가입한 농촌지역 근로자는 농업 분야에서 180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증명하여야 함
  - 근로 활동 지속 가능
  - 노령연금은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에 따라 해외 지급 가능
- 장애인을 위한 노령연금(사회보험)
  - 180개월 이상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고, 육체적, 정신적, 지적 또는 감각기관에 대한 장기간 장애로 판정되는 남자 60세, 여자 55세 도달자
  - 180개월 이상 동안 장애이어야 하며 의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
  - 장애인을 위한 노령연금은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에 따라 해외 지급 가능
- 장기가입연금(사회보험)
  - 보험료 납부기간이 남자 35년, 여자 30년 이상인 경우 연령에 무관하게 지급
  - 장기가입연금은 양자 및 다자간 협정에 따라 해외 지급 가능
- 특수직종 장기가입연금(사회보험)
  - 인체 유해 환경에 노출되었고, 유해 환경에 따라 15년, 20년, 또는 25년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는 경우 연령과 무관하게 지급
  - 고용은 중단되어야 함
  - 특수직종 장기가입연금은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에 따라 해외 지급 가능
- 장애인을 위한 장기가입연금(사회보험)
  - 중증 장애로 판정된 경우 보험료 납부기간 조건은 남자 25년, 여자 20년 ; 보통 장애로 판정된 경우 보험료 납부기간 조건은 남자 29년, 여자 24년 ; 경증 장애로 판정된 경우 보험료 납부기간 조건은 남자 33년, 여자 28년
  - 국가사회보장기관(National Social Security Institute)이 장애 정도 판정
  - 장애인을 위한 장기가입연금은 양자 혹은 다자간 협정에 따라 해외 송금 가능
- 노령부조(사회부조, 소득조사)
  - 65세 도달자로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음
  - 소득조사 : 가구 월소득이 법정 1인당 월 최저임금(998 reais, 2019년 1월 기준)의 25% 미만인 경우 지급
  - 수급자격은 2년마다 재검토

## ○ 장애급여

- 장애연금(사회보험)
  - 영구 근로불능으로 판정되고 보험료 납부기간이 12개월 이상
  - 장애가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경우 보험료 납부기간 요건 없음
  - 고용은 중지되어야 함
  - 국가사회보장기관(National Social Security Institute)이 장애 등급 판정
  - 장애연금은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에 따라 해외 송금 가능
  - 상시간병수당 : 일상생활 기능 수행을 위해 타인의 상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
- 장애부조(사회부조, 자산조사)
  - 장애로 판정
  - 가구 월소득이 법정 1인당 월 최저임금(998 reais, 2019년 1월 기준)의 25% 미만
  - 수급자격은 2년마다 재검토

## ○ 유족급여

- 유족연금(사회보험)
  - 최소기간 요건 없음
  - 수급가능 유족 : 배우자 또는 동거인, 21세(완전장애, 지적 또는 정신 장애, 중증 신체 장애는 연령 제한 없음) 미만 자녀. 수급가능 배우자·동거인·자녀(우선순위에 따라)가 없는 경우 부모 및 21세(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) 미만 형제자매
  - 유족연금은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에 따라 해외 송금 가능

## 6

### 급여종류별 지급액

## ○ 노령급여

- 노령연금(사회보험)
  -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70%에 보험료 납부기간 1년당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1%씩 가산
  - 1999년 11월 28일 이전에 최초 가입한 자의 경우 월 평균소득은 1994년 7월 이후 전체 월 소득 중 높은 소득 80%에 기초하여 산정
  - 1999년 11월 28일 후 최초 가입한 자의 경우 월 평균소득은 전체 월 소득 중 높은 소득 80%에 기초하여 산정
  - 가입자는 사회보장지수(Factor Previdenciario) 방식을 이용해서 계산된 연금을 선택할 수 있음
  - 사회보장지수는 가입자의 보험료율, 납부기간, 연령, 기대여명에 기초한 보험계수임
  - 급여 산정을 위한 월 최저소득 : 법정 월 최저임금(998 reais, 2019년1월 기준)
  - 급여 산정을 위한 월 최고소득 : 5,839.45 reais(2019년1월 기준)
  - 최저 월 노령연금 : 법정 월 최저임금
  - 최대 월 노령연금 : 5,839.45 reais 또는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100% 중 작은 금액 (2019년 1월 기준)
- 장애인을 위한 노령연금(사회보험)
  - 노령연금(사회보험) 산정 방식과 동일

- 장기가입연금(사회보험)
  -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100% 지급
  - 1999년 11월 29일 전에 최초 가입한 자의 경우 월 평균소득은 1994년 7월 이후 전체 월 소득 중 높은 소득 80% 기초에 사회보장지수를 곱하여 산정
  - 1999년 11월 28일 후 최초 가입한 자의 경우 월 평균소득은 전체 월 소득 중 높은 소득 80% 기초에 사회보장지수를 곱하여 산정
  - 가입자는 연령 및 보험료 납부기간의 합이 95(남자, 2026년까지 100으로 체증), 85(여자, 2026년까지 90으로 체증)인 경우, 사회보장지수(Factor Previdenciario)의 비적용을 선택할 수 있음
  - 사회보장지수는 가입자의 보험료율, 납부기간, 연령, 기대여명에 기초한 보험계수임
  - 급여 산정을 위한 월 최저소득 : 법정 월 최저임금(998 reais, 2019년1월 기준)
  - 급여 산정을 위한 월 최고소득 : 5,839.45 reais(2019년1월 기준)
  - 최저 월 장기가입연금 : 법정 월 최저임금
- 특수직종 장기가입연금(사회보험)
  -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100% 지급
  - 1999년 11월 29일 전에 최초 가입한 자의 경우 월 평균소득은 1994년 7월 이후 전체 월 소득 중 높은 소득 80%에 기초하여 산정
  - 1999년 11월 28일 후 최초 가입한 자의 경우 월 평균소득은 전체 월 소득 중 높은 소득 80%에 기초하여 산정
  - 급여 산정을 위한 월 최저소득 : 법정 월 최저임금(998 reais, 2019년1월 기준)
  - 급여 산정을 위한 월 최고소득 : 5,839.45 reais(2019년1월 기준)
  - 최저 월 장기가입연금 : 법정 월 최저임금
- 장애인을 위한 장기가입연금(사회보험)
  - 특수직종 장기가입연금(사회보험) 산정 방식과 동일
  - 지급횟수 : 연간 13회
  - 연금액 조정 : 생활 비용 지수 또는 법정 월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
- 노령부조(사회부조, 소득조사)
  - 급여액은 법정 월 최저임금(998 reais, 2019년1월 기준)
  - 연금액 조정 : 법정 월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

## ○ 장애급여

- 장애연금(사회보험)
  - 가입자 평균 월 소득의 100% 지급
  - 농촌지역 근로자의 경우 법정 월 최저임금의 100%
  - 1999년 11월 28일 이전에 최초 가입한 자의 경우 월 평균소득은 1994년 7월 이후 전체 월 소득의 높은 소득 80%에 기초하여 산정
  - 1999년 11월 28일 후 최초 가입한 자의 경우 월 평균소득은 전체 월 소득 중 높은 소득 80%에 기초하여 산정
  - 급여 산정을 위한 월 최저소득 : 법정 월 최저임금(998 reais, 2019년1월 기준)
  - 급여 산정을 위한 월 최고소득 : 5,839.45 reais(2019년1월 기준)

- 최저 월 장애연금 : 법정 월 최저임금(998 reais, 2019년1월 기준)
- 최고 월 장애연금 : 5,839.45 reais(2019년1월 기준)
- 상시간병수당 : 장애연금의 25% 지급
- 지급횟수 : 연간 13회
- 연금액 조정 : 생활 비용 지수 또는 법정 월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
- 장애급여(사회부조, 소득조사)
  - 월 급여는 법정 월 최저임금(998 reais, 2019년1월 기준)
  - 연금액 조정 : 법정 월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

## ○ 유족급여

- 유족연금(사회보험)
  - 사망자가 받았거나 수급권을 가진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100% 지급
  - 농업지역 근로자의 경우 법정 월 최저임금의 100%
  - 연금은 수급가능 유족에게 균분 지급. 만약 유족 중 한 명의 수급권이 없다면 나머지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액이 재산정됨
  - 사망자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18개월 미만이거나 사망 전 배우자 또는 동거인과 결혼 또는 동거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금이 4개월 동안 지급됨
  - 사망자가 최소 18개월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고 사망 전 배우자 또는 동거인과 결혼 또는 동거를 최소 2년 동안 한 경우, 급여 기간은 배우자 또는 동거인의 연령에 따라 상이함; 21세 미만은 3년 동안 지급, 21세~26세는 6년 동안, 27세~29세는 10년 동안, 30세~40세는 15년 동안, 41세~43세는 20년 동안, 44세 이상은 평생 지급
  - 최저 월 유족연금 : 법정 월 최저임금(998 reais, 2019년1월 기준)
  - 최고 월 유족연금 : 5,839.45 reais(2019년1월 기준)
  - 지급횟수 : 연간 13회
  - 연금액 조정 : 생활 비용 지수 또는 법정 월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

## 7

### 관리운영기관

#### ○ 경제부(Ministry of Economy)

- <http://www.economia.gov.br>
- 전반적 감독, 보험료 징수

#### ○ 국가사회보장기관(National Social Security Institute)

- <http://www.inss.gov.br>
- 급여 관리